

입주시설 관리 규칙

입주시설 관리규칙

제정 2018. 9. 18.
개정 2020. 9. 3.
개정 2021. 2. 3.
전면개정 2022. 5. 13.
개정 2022. 10. 24.
개정 2024. 9. 6.
개정 2026. 3. 1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제주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 입주시설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입주시설에 입주하는 입주자 관리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기업” 이라 함은 진흥원에서 정하는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한 법인 및 단체 등을 말한다.
2. “입주인” 라 함은 진흥원에서 정하는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한 작가, 창작자 등 개인을 말한다.
3. “입주자” 는 “입주기업” 및 “입주인” 을 포함 한 진흥원에서 정하는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한 개인 및 법인, 기관 등의 통칭을 말한다.
4. “졸업” 이라 함은 입주자의 입주계약이 만료됨을 말한다.
5. “퇴거” 라 함은 사업전망이 불투명 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 입주계약 만료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함을 말한다.
6. “입주실” 이라 함은 진흥원 자체 입주심사를 통해 선정된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입주공간을 말한다.
 7. “대부실” 이라 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선정절차를 통해 선정된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입주공간을 말한다.
 8. “입주시설” 이라 함은 “입주실 및 대부실” 등 입주공간 및 관련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 2 장 입 주 기 업

제 1 절 입 주 실 임 대

- 제4조(입주대상)** ① 진흥원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는 제1항의 제1호를 우선입주대상자로 하며, 이외 시설의 특징에 맞게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1. 문화산업관련기업 중 영상물 제작자(영화, 애니메이션 등)
 2. 문화산업관련기업 중 향토문화예술진흥사업자
 3. 문화산업관련기업 중 중소기업 창업자
 4.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 제5조(입주모집)** ① 입주기업 모집은 입주실 현황 및 기타 내부사정에 따라 정기모집과 수시모집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입주모집 공고는 정기모집의 경우 입주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원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며, 결원 및 공실 발생 등 진흥원의 필요시에는 수시모집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입주신청) 진흥원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신청서” 와 구비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승인) ① 입주 승인여부는 자체 선정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다만, 진흥원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

해당 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하며 제주콘텐츠진흥원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단 외부심사위원이 심사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원장의 승인 후 지원 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6조내지 제6조의4를 준용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9.6.>

③ 입주심사는 “[별지 제3호 서식]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입주(연장) 승인 심사표”를 활용하되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입주자 선정시 해당 사업의 심사표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④ 외부심사위원의 수당은 진흥원의 실비보상 규칙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입주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미 입주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강제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를 당한 자
2. 허위로 입주신청을 한 자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4. 소음·진동 등 공해 다발 업종사업자
5. 휴·폐업 중인 자
6. 진흥원 사업과 관련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참여제한 조치 중인 자
7.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8. 기타 진흥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입주계약체결 및 입주) ①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진흥원이 통보한 임대개시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단,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는 입주 전에 납부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연기를 신청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입주연기신청은 제1항에서 정한 입주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 입주연기신청서” 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은 입주연기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입주연기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입주 연기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기본 임대계약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시 2년 이내로 한다. 단 시설의 특징에 맞게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기본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입주자격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희망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 입주기간 연장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은 입주기간 연장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한다.

⑤ 진흥원은 입주기간 연장 신청이 있더라도 사업의 변경, 종료 등 진흥원의 사정으로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에 의한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주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입주승인을 얻은 경우
3. 입주승인을 얻은 후 임의로 타인에게 시설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4. 기타 계약 조건이나 관련 제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 2 절 대 부 실(사용·수익허가)

제12조(대부실 입주자 선정 등) ① 대부실 입주기업 선정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의해 선정된 입주기업과 이 규칙 제8조의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대부실의 입주기업 선정의 취소, 입주기간, 임대차계약 및 해지 및 그 외 사항 등의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3 절 부담금 및 의무

제13조(입주기업부담금 등) ① 임대료는 “별표 1” 과 같다.

② 제1항 외 입주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이행보증금, 공제보험료
2. 입주기업이 사용한 전기, 상하수도 및 공용부 청소, 보안시스템 등의 관리비
3. 그 외 유상의 시설 및 장비 사용료

제14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입주기업은 입주공간 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입주실 등 시설변경 신청서” 를 제출하여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변경사항 통보) ①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진흥원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일정기간 입주공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입주 신청시 제출한 사업추진 계획의 변경
3. 기타 임대차 계약서 내용의 변경(대표자, 상호, 사업자등록 변경 등)

② 제1항에 의한 변경통보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변경 사업계획서 및 사유서
2. 기타 진흥원이 요청하는 서류

③ 입주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를 입주사무실로 변경하여 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 절 졸업 및 퇴거

제16조(졸업) ①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으로 처리한다.

1. 시설물사용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품개발 또는 시판의 성공 등으로 입주자가 독립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어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3. 진흥원에서 졸업을 결정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졸업대상자에 대해 진흥원은 시설물사용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통보하고, 졸업대상자는 졸업 예정일 30일전에 “[별지 제8호 서식] 졸업신청서” 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졸업여부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퇴거조치) ① 진흥원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사용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임대관리비를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2. 사전 통보 없이 입주공간을 3개월 이상 비워둘 경우
3. 사업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진흥원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과도한 소음발생 등 기타의 사유의 업무방해 등으로 타 입주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5. 국세 및 지방세의 고의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생개시, 회사 정리개시 또는 경매 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6. 관련 제 규칙을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시정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진흥원에서 사업실적 및 평가결과 부실업체로 인정하는 경우
8. 외부기관의 불법 행위 단속에 적발되어도 시정조치 하지 않을 경우
9. 입주기업 또는 그 상근 임원이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10. 기업 또는 구성원이 위법행위 또는 진흥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경우
11. 입주 후 사업자등록상 사업장(본사, 지사 등) 소재지가 진흥원의 주소지로 이전 하지 않은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퇴거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진흥원은 입주자에게 퇴거 사유와 예정일을 명시하여 퇴거예정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여야 한다.
- ③ 입주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이의 제기를 한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 결정을 통보한다.
- ⑤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 퇴거 신청서” 를 퇴거 희망일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진흥원은 퇴거에 따른 입주자의 부담금(미납금 등 포함) 및 원상회복 등의 비용을 산출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입 주 인

제 1 절 입 주 실 임 대

제18조(입주대상) ① 진흥원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외 시설의 특징에 맞게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1. 만화·웹툰 작가 및 만화·웹툰 작가
2. 작가 지망생
3. 기타 진흥원 사업과 관련된 자로 진흥원이 승인하는 자

제19조(입주신청) 진흥원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입주신청서” 와 구비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입주승인) ① 입주 승인여부는 자체 선정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다만, 진흥원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 해당 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하며 제주콘텐츠진흥원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단 외부심사위원이 심사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원장의 승인 후 지원 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6조내지 제6조의4를 준용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9.6.>

③ 입주심사는 “[별지 제4호 서식] 제주콘텐츠진흥원 입주(연장) 승인 심사표”를 활용하되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입주자 선정 시 해당 사업의 심사표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6.>

④ 외부심사위원의 수당은 진흥원의 실비보상 규칙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입주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미 입주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강제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를 당한 자
2. 허위로 입주신청을 한 자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4. 진흥원 사업과 관련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참여제한 조치 중인 자
5.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6. 기타 진흥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2조(입주계약체결 및 입주) ①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진흥원이 통보한 임대개시일 이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②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입주연기신청은 제1항에서 정한 입주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 입주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은 입주연기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입주연기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입주 연기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기본 임대계약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하며, 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총 2회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의해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 입주기간 연장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입주기간 연장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한다.

제24조(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2조에 의한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주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입주승인을 얻은 경우
3. 입주승인을 얻은 후 임의로 타인에게 시설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4. 기타 계약 조건이나 관련 제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 2 절 부담금 및 의무

제25조(입주인부담금 등) 임대보증금, 임대료, 공과금 등 입주실 유지관리에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입주인에게 징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입주인은 입주공간 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입주실 등 시설변경 신청서” 를 제출하여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변경사항 통보) ① 입주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진흥원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일정기간 입주공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입주 신청시 제출한 사업추진 계획의 변경
3. 기타 임대차 계약서 내용의 변경

② 제1항에 의한 변경통보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변경 사업계획서 및 사유서
2. 기타 진흥원이 요청하는 서류

제 3 절 졸업 및 퇴거

제28조(졸업) ① 입주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으로 처리한다.

1. 시설물사용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진흥원에서 졸업을 결정한 경우
3. 입주계획의 조기달성으로 입주인의 자생력이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졸업대상자에 대해 진흥원은 시설물사용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통보하고, 졸업대상자는 졸업 예정일 30일전에 “[별지 제8호 서식] 졸업신청서” 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졸업여부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경고조치) 진흥원은 입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주실이 포함된 건물 내에서 흡연 및 음주
2. 진흥원 자산의 파손
3. 타인의 활동, 시설운영,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4. 애완동물이나 기타 동물(안내견 제외)의 출입
5.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6. 입주실이 포함된 건물 내에서 취사 및 입주실의 주거용도 사용
7. 사전 협의 없이 구조물, 기계류 또는 기타 시설물을 파괴,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못, 구멍, 흠파기) 등
8. 진흥원에서 요청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등 진흥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
9. 진흥원에 사전 통보 없이 월 합산 15일 이상 입주실에 출입기록이 없는 경우
10. 지정된 기한 내에 입주기간 연장신청서 및 졸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1. 공용시설에 대해 진흥원의 승인 없이, 또는 승인 받은 바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물품을 반입, 반출, 장기 적재한 경우
12. 기타 입주실 운영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0조(퇴거조치) ① 진흥원은 입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인을 퇴거시킬 수 있다.

1. 지정된 입주 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2. 진흥원에 사전 통보 없이 월 합산 25일 이상 입주실에 출입기록이 없는 경우
 3. 제5조의 입주대상 요건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13조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5. 동 규칙의 입주신청서, 실적보고서, 졸업신청서, 입주기간 연장신청서 등 진흥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입주공간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는 경우
 7. 주취, 폭행, 위협 등 입주공간 내에서 불법행위를 범한 경우
 8. 불법적인 물건의 소지, 사용 혹은 분배
 9. 무기나 폭발물, 다른 위험한 물건의 소지
 10. 기타 입주인의 불법행위 또는 진흥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경우
 11. 그 밖에 입주공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12. 제13조의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를 시키는 경우 진흥원은 입주인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퇴거예정일 20일 전까지 퇴거예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입주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 제기를 한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 결정을 통보한다.

⑤ 입주인이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6호] 퇴거신청서”를 퇴거 희망일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진흥원은 퇴거에 따른 입주인의 부담금(미납금 등 포함) 및 원상회복 등의 비용을 산출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정산금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에 진흥원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 장 입주시설 시설 사용시간

제31조(사용시간) ① 입주시설의 사용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 사용시간의 변경은 시설 및 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사고, 시설 고장 및 도난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반드시 진흥원의 사전 동의하에 실행하여야 하며, 이후 진흥원이 심각한 문제발생이라 판단되는 경우 사용기간을 임의로 재조정할 수 있다.

제32조(신청 및 허가) 제31조 사용시간 외에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사용 예정일 최소 1일 전까지 [별지 10호 내지 1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5 장 부대시설 시설 사용

제33조(신청 및 허가) 진흥원의 시설 및 입주시설의 주차장 및 야외공연장 등 부대시설의 사용을 위해서는 [별지 13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신청 후 원장의 승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24.>

부 칙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 9.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5.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 후 2022. 5. 1.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제2조(명칭개정) 종전의 「입주기업 관리규칙」을 「입주시설 관리규칙」으로 개정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을 제외한 다른 규정 중 입주기업 관리규칙의 명칭 등은 개정된 입주시설 관리규칙으로 한다.

부 칙 <2022. 10. 24.>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9. 6.>(제주콘텐츠진흥원 정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정관 개정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규정·규칙 및 지침의 개정) 다른 규정·규칙 및 지침 중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하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을 “제주콘텐츠진흥원장”으로 하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사장”을 “제주콘텐츠진흥원이사장”으로 하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인사위원장”을 “제주콘텐츠진흥원인사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2026. 3. 18.>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웹툰캠퍼스 운영규칙

제주웹툰캠퍼스 운영규칙

제정 2021. 4. 29.

전면개정 2022. 7. 19.

개정 2024. 9. 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제주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제주웹툰캠퍼스 웹툰창작작가실(이하 “작가실” 이라 한다)과 입주기업실을 포함한 제주웹툰캠퍼스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웹툰캠퍼스” (이하 “웹툰캠퍼스”)란 만화의 창작과 관련 사업 및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하며, 진흥원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서귀포시 동홍로 41) 가동 1, 2층 및 나동 1층 공간을 말한다.
2. “입주” 라 함은 진흥원에서 정하는 입주절차에 따라 창작 활동을 목적으로 진흥원이 관장하는 공간시설을 점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주인” 또는 “입주기업” 이라 함은 진흥원에서 정하는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한 개인 창작자 또는 기업 등을 말하며, “입주자” 는 이의 통칭을 말한다.
4. “졸업” 이라 함은 입주자의 입주계약이 만료됨을 말한다.
5. “퇴거” 라 함은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입주계약 만료일 이전에 입주자의 사정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을 말한다.
6. “작가실” 이라 함은 진흥원에서 정하는 입주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웹툰창작작가실 입주공간을 말한다.
7. “입주기업실” 이라 함은 진흥원에서 정하는 입주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웹툰캠퍼스 입주기업실 입주공간을 말한다.

8. “입주시설” 이라 함은 동조 6호, 7호에서 정의한 시설을 총칭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사업) 웹툰캠퍼스는 입주시설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입주자의 모집과 관리
2. 입주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입주자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과 운영

제 2 장 입주자 모집 및 관리

제4조(입주 대상) ① 작가실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화·웹툰 작가 및 만화·웹툰 스토리 작가
2. 작가 지망생
3. 기타 진흥원 사업과 관련된 자로 진흥원이 승인하는 자

② 입주기업실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7항에 의한 ‘만화사업자’ 이거나, ‘만화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2. 기타 만화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기업

제5조(모집 및 관리) 입주자 모집 및 관리는 진흥원 입주시설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제 3 장 작가실 운영 및 관리

제6조(시설운영 범위) ① 작가실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가실의 운용, 보관, 보전에 관한 지시 및 감독
2.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모든 관리 운용
3. 시설의 보수, 유지 및 사용 지원 관리
4. 시설의 손실 또는 파손 실태 파악 및 사용하지 못하는 물품의 보충 유지

② 작가실 운영의 총괄책임자는 웹툰캠퍼스 담당 부서장이 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를 두고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출입 관리) 작가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주자에 대하여 출입을 관리한다.

1. 출입 시간은 진흥원의 평일 근무시간(09:00~18:00)으로 한다.
2. 원장은 작가실의 출입 관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진흥원이 설치한 잠금장치를 입주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4. 입주가 허가된 자 외에 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에 일시적 출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입주자는 주거를 목적으로 기숙할 수 없다.
6. 입주자의 과실로 분실 및 파손, 절도 등의 사고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한 보수 및 배상책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7. 입주자가 일정기간 입주공간을 비워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에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진흥원에 통보토록 한다.

제8조(시설이용 준수사항) ① 원장은 작가실의 보호와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주자의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장은 시정, 경고,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의 입주 기간 중 준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는 진흥원의 시설사용에 있어 공공재산을 사용함을 명심하여 시설 및 물품의 사용에 있어 낭비와 훼손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입주자가 작가실 및 공용장비 또는 공간 사용 중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 및 분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어야 한다.
3. 입주자는 작가실 내에서 소란 등의 기타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4. 입주자에게 방문객이 올 경우 방문객 역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교육해야 하며, 방문객에 의하여 타인 또는 작가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5. 입주자는 컴퓨터 내에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6. 입주자는 지원물품과 설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실외로 반출할

수 없다.

7. 입주자는 원장의 승인 없이 진흥원 시설물에 부착물 및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없다.

8. 입주자는 입주 공간 내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없다.

9. 입주자는 소음 과다발생 등으로 타 입주자의 창작 및 업무 활동 등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0. 입주자는 입주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11. 인화물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시설 내로 반입할 수 없다.

12. 기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반입을 할 수 없다.

13. 입주자는 개인 소지품(특히 귀중품 등) 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분실 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웹툰캠퍼스 담당 부서장은 제2항에 대한 준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대한 내부 시설물 현황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④ 입주자는 입주시설관리규칙 “별지12호”의 입주자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① 입주자가 제8조의 준수사항 등의 위반으로 진흥원의 시설 및 비품 등의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법규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입주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진흥원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의 하에 원상복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원상복구) 입주자는 졸업 또는 퇴거의 경우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퇴거일) 이전까지 입주실에서 개인 물품을 철수하고, 입주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재산의 반환) ①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경우에는 진흥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

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파손된 장비 및 물품에 대해 진흥원이 원상 복구할 경우 그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입주자 관리 및 지원

제12조(실태 및 실적조사) ① 원장은 입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적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에 입주자는 실태조사 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동계획서 등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원장이 요구한 기일 내에 실태조사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제13조(실태조사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 원장은 실태조사 후 입주자별 우수, 양호, 보통, 불량 등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한다.

② 원장은 불성실한 활동 등으로 불량 등의 평가를 받은 입주자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경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입주기간 연장 신청 시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프로그램 운용) ① 입주자 관리 담당부서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와 같이 웹툰캠퍼스 시설을 이용하여 입주자 또는 이용자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할 수 있다.

1. 강의실, 회의실, 작가실, 전시 등 각종 시설 지원
2. 작가실 공용장비 지원 : 컴퓨터, 액정타블렛, 스캐너, 프린터, 복사기, 만화 저작 소프트웨어 등
3. 입주자 및 일반인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유치
4. 입주자 작품 전시 및 프로모션
5. 진흥원 사업에 있어 입주자에 대한 우선 참여 기회 제공 등

제 4 장 시설 및 공용장비 운영

제15조(사용시설 및 장비)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용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가실 : PC, 액정타블렛, 책상, 의자, 냉난방기, 인터넷 등 입주인 창작 공간
2. 입주기업실 : 책상, 의자, 냉난방기, 인터넷 등 입주기업 사무 공간
3. 교육실 : 책상, 의자, PC, 액정타블렛, 빔프로젝터, 스크린 등 웹툰 교육 공간
4. 회의실 : 회의책상, 의자, 빔프로젝터, 스크린 등 회의 공간
5. 휴게실 : TV, 테이블, 의자, 냉장고 등 탕비실 및 휴게 공간
6. 기타 : 연차별 사업추진에 따라 신규 구축되는 시설 및 장비

제16조(사용범위) 진흥원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원 자체 사업과 업무상 필요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진흥원과 업무협약을 한 기업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웹툰캠퍼스 입주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기업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7조(사용장소) 승인에 따른 장비 사용 시에는 해당실의 실내에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운영시간) ① 웹툰캠퍼스 시설의 운영공간과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시설 및 휴게실 : 진흥원의 평일 근무시간(09:00~18:00)
2. 사무실, 교육실, 전시공간, 만화공간 : 진흥원의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법정공휴일, 12:00~13:00 제외)

② 교육, 행사, 점검, 공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운영시간 조정 해당일 전까지 입주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 변경사실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제 5장 웹툰캠퍼스 운영 및 관리

제19조(운영 및 관리) 원장은 웹툰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담당 부서장을 따로 임명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1. 웹툰캠퍼스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운영 관리 및 유지
가. 시설.장비 훼손 및 손상실 파악
나. 불용품 및 폐품의 파악
2. 웹툰캠퍼스 사업과 목적에 따르는 프로젝트 유치
3. 웹툰캠퍼스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자 기술지원
4. 기타 시설 및 장비 담당자 지정

제20조(시설장비관리) ① 시설.장비 담당자는 웹툰캠퍼스의 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장비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②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유지 및 보수 관리를 위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시설.장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유지보수 점검보고서를 통해 관리 할 수 있다.

제 6 장 부담금, 졸업 및 퇴거

제21조(부담금, 졸업 및 퇴거) 웹툰캠퍼스 입주자에 대한 부담금, 졸업 및 퇴거 규칙은 입주시설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제 7 장 출입관리 및 보안

제22조(출입관리) 웹툰캠퍼스 출입관리 및 보안 규칙은 CGI센터의 출입관리 및 보안규칙을 준용한다.

제 8 장 시설 관리

제23조(시설관리) 웹툰캠퍼스 시설관리는 CGI센터의 시설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 9 장 주차 관리

제24조(주차관리) 웹툰캠퍼스 주차관리는 CGI센터의 주차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준용규정) 운영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콘텐츠진흥원 제반규정 및 규칙과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2021.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 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입주시설관리 규칙 전면개정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24. 9. 6.>(제주콘텐츠진흥원 정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정관 개정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규정·규칙 및 지침의 개정) 다른 규정·규칙 및 지침 중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하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을 “제주콘텐츠진흥원장”으로 하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사장”을 “제주콘텐츠진흥원이사장”으로 하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인사위원장”을 “제주콘텐츠진흥원인사위원장”으로 한다.